# 제6장 실행계획

- 1. 실행계획의 개요
- 2. 경관관련 지역,지구,구역 등의 적용 및 연계방안
- 3. 경관조례의 개정
- 4.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관리
- 5. 경관사업 추진
- 6. 경관협정의 적용 및 운영
- 7. 경관관련 심의 및 자문
- 8. 경관관리 실행조직 강화 및 운영

# 1. 실행계획의 개요

• 당진시 기본경관계획은 2007년 제정된 경관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서 당진시에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수립했던 각종 계획의 행정 지침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경관의 체계적인 보 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기준 마련 및 실천력 확보를 통하여 당진시의 경관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함

### 관련법 및 지역·지구·구역과의 연계방안

- 새로운 법과 계획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의 관련법에서 수립되는 계획을 통하여 경관계획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 파악
- 특히, 경관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관지구, 미관지구에 대한 연계뿐만 아니라, 토지이 용과 관련하여 해당 적용 유무 검토 시행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해 지정되는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는 용도 및 높이 등에 대한 규제적 내용을 포함하므로 경관관리의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

### 경관조례의 개정

• 경관조례의 개전을 통하여 경관협정 및 경관위원회의 기능위상 재정립

### 경관사업의 운영방안

- 경관계획을 일시에 적용하기 보다는 현행 경관관련 계획을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설정
- 경관계획의 적용절차 및 단계별 적용방안 제시

### 경관협정

•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하여 주민 스스로 약속을 체결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경관협정의 체결을 유도하고 적극 지원하여 활성화

### 경관행정

- 당진시 경관행정 체계속에서 단기적으로 추진해야할 추진체계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추진 체계를 구분하여 제시
-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법적인 실효성을 갖기 위한 실제적 적용을 위해 경관위원회의 기능 위상 강화 및 세분화
- 경관계획의 체크리스트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절차 제시

# 2. 경관관련 지역,지구,구역 등의 적용 및 연계방안

• 경관계획을 적용할 수 있는 계획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건축계획이며, 사전협의를 통해 경관계획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반영여부는 심의를 통해서 판단

 $\bullet$ 

-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도시개발사업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주택재개발사업계획, 주택재건축사업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계획, 택지개발사업계획, 주택종 합계획
-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사업 :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 건축법에 의한 건축사업
- 관련절차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건축공동심의, 건축계획은 건축심의, 건축인허가, 건축협의를 통해서 반영여부를 판단

구분	법률	계획	가이드라인 적용	관련절차
국토	국토기본법			
지역	-국토계획	국토종합계획		
		도 종합계획		
		시 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 계획		
도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단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역·지구·구역계획		
		기반시설설차·정비·개량계획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심의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재정비촉진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심의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심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개선시업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심의
		주택재개발사업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심의
		주택재건축사업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심의
		도시환경정비사업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심의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심의
	주택법	<u></u> 주택종합계획	건축계획	건축심의허가협의설계지문
	경관법	경관계획	특정경관계획	경관심의
	농어촌정비법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심의
		농공단지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건축물	건축법	건축계획	건축계획	건축심의허가협의설계지문
광고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옥외광고물계획	옥외광고물계획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의보존관리및활용계획	오픈스페이스계획	
시설물	교통안전법	교통안전시설계획	공공시설물계획	
자연	산림기본법	산림기본계획	오픈스페이스계획	
경관	신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	오픈스페이스계획	산지경관영향검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도시림등에관한기본계획	오픈스페이스계획	
	지연공원법	공원기본기본계획	오픈스페이스계획	중앙공원심의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법률	공원녹지기본계획	오픈스페이스계획	도시계획심의
	지연환경보존법	지연환경보존기본계획	오픈스페이스계획	지연경관영향검토
	하천법	하천기본계획	오픈스페이스계획	하천관리심의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오픈스페이스계획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생활환경정비시업계획	경관설계지침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관광농원개발	경관설계지침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마을정비계획	경관설계지침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 정책 심의회

# 당진시 경관관련 지역, 지구 및 구역의 지정 현황 및 경관설계지침 적용 가능성

- 우리나라의 용도 지역, 지구 및 구역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거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용도지역지구(제5조 제1호 관련)는 다음과 같음
- 이와 관련하여 당진시의 경관관련 지역, 지구 및 구역의 지정현황과 경관설계지침 적용 관련성을 검토하면 아래 표와 같음
  - 경관설계지침의 적용 관련성 중 지구단위는 국계법상상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추진시 적용
  - G.L.은 경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경관설계지침의 적용시에 해당함(특히,공공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G.L.을 적용)

법률	조문	지역·지구	당진시 지정유무	경관설계지침 적용 관련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사육제한구역	확인	G.L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	미지정	G.L
건축법	제18조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지정	G.L
선기병	제60조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71.0	G.L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경제자유구역	미지정	지구단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제1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	
고도 모른 옷 파성에 판만 극별합	제10조제1항제2호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고속국도법	제8조	접도구역	지정	G.L
고기에워비	제22조의2	골재채취금지구역	미지정	G.L
골재채취법	제34조	골재채취단지	미지정	(하천,공유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과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	지정	지구단위, G.L
반성신증법	제52조	관광단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보금자리주택지구	미지정	지구단위
	제2조제7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지정	G.L
	제36조제1항제1호	도시지역	지정	G.L
	제36조제1항제2호	관리지역	지정	G.L
	제36조제1항제3호	농림지역	지정	G.L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	G.L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주거지역	지정	G.L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상업지역	지정	G.L
	제36조제1항제1호다목	공업지역	지정	G.L
	제36조제1항제1호라목	녹지지역	지정	G.L

법률	조문		지역·지구	당진시 지정유무	경관설계지침 적용 관련성
	제36조제1항제2호가목	보전	관리지역	지정	G.L
	제36조제1항제2호나목	생산	관리지역	지정	G.L
	제36조제1항제2호다목	계획	관리지역	지정	G.L
	제37조제1항제1호	경관	지구(자연,수변,시가지)	미지정	G.L
	제37조제1항제2호	미관	지구(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미지정	G.L
	제37조제1항제3호	고도	지구(최저고도,최고고도)	미지정	G.L
	제37조제1항제4호	방화	지구	미지정	G.L
	제37조제1항제5호	방재	지구	미지정	G.L
	제37조제1항제6호	보존	지구(문화자원,중요시설물,생태계)	미지정	G.L
	제37조제1항제7호		보호지구(학교,공용,항만,공항)	지정(항만)	G.L
	제37조제1항제8호		지구(자연취락,집단취락)	지정	G.L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9호	개발	진흥지구(주거개발,산업개발,유통 ,관광휴양개발,복합,특정개발)		G.L
	제37조제1항제10호	특정	특정용도제한지구		G.L
	제38조의2	도시	자연공원구역	미지정	G.L
	제39조	시가화조정구역		미지정	G.L
	제40조	수산	자원보호구역	지정	
	제50조	지구 단위 계획	1종(기존시가지정비, 기존시기 지 관리, 기존시가지 보전,신시 가지개발, 복합구역)		지구단위, G.L
		세획 구역	2종(주거형,산업형,유통형,관광 휴양형,복합형,특정)	기정	지구단위, G.L
	제63조	개발	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지구단위, G.L
	제67조	기반	시설부담구역	미지정	G.L
	제4조 및 제5조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G.L
	제4조 및 제5조	통제	보호구역	미지정	G.L
	제4조 및 제5조	제한	보호구역	미지정	G.L
	제4조 및 제6조	비행	안전구역	미지정	G.L
	제4조 및 제6조	비행	안전 제1구역	미지정	G.L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6조	비행	안전 제2구역	미지정	G.L
	제4조 및 제6조	비행	안전 제3구역	미지정	G.L
	제4조 및 제6조	비행	안전 제4구역	미지정	G.L
	제4조 및 제6조	비행	안전 제5구역	미지정	G.L
	제4조 및 제6조	비행	안전 제6구역	미지정	G.L
	제4조 및 제7조	대공	방어협조구역	미지정	G.L

법률	조문	지역·지구	당진시 지정유무	경관설계지침 적용 관련성
	제4조	수변구역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제16조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제20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붕괴위험지역	미지정	G.L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기업도시개발구역	×	
	제4조	수변구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제15조	건축허가제한지역	×	
	제16조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제21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농어촌정비법	제9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미지정	G.L
	제101조	마을정비구역	미지정	G.L
	제82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지구단위, G.L
	제94조 및 제95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미지정	G.L
	제28조제1항	농업진흥지역	지정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	농업진흥구역	지정	G.L
	제28조제2항제2호	농업보호구역	지정	
	제4조	연구개발특구		
	제35조제1항제1호	주거구역		
	제35조제1항제2호	상업구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3호	녹지구역	×	
	제35조제1항제4호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제35조제1항제5호	산업시설구역		
	제24조	도로구역	지정	G.L
- 7.11	제49조	접도구역	지정	G.L
도로법	제50조	입체적 도로구역	미지정	G.L
	제51조	도로보전입체구역	미지정	G.L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구단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구역	미지정	지구단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	미지정	지구단위

법률	조문	지역·지구	당진시 지정유무	경관설계지침 적용 관련성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 별법	제6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	제4조	특정도서		
법	제12조의3	시·도특정도서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	동·서·남해안권개발구역	지정	G.L
	제10조제1항제1호	절대보전무인도서	미지정	G.L
구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준보전무인도서	미지정	G.L
	제10조제1항제3호	이용가능무인도서	미지정	G.L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	문화산업단지	미지정	지구단위, G.L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문화지구	미지정	지구단위, G.L
	제2조제2항	지정문화재구역	미지정	G.L
그 참 게 ㅂ 중 범	제9조 및 제75조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G.L
문화재보호법	제14조 및 제75조	가지정문화재구역	미지정	G.L
	제47조	등록문화재구역	미지정	G.L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물류단지	미지정	지구단위, G.L
	제6조제2항	백두대간보호지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	핵심구역	×	
	제6조제2항제2호	완충구역		
사방사업법	제4조	사방지	지정	G.L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연휴양림구역	미지정	지구단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채종림구역	미지정	G.L
<u></u> 산림보호법	제7조	산림보호구역	미지정	G.L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시험림구역	미지정	G.L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산업기술단지	미지정	지구단위, G.L
	제6조	국가산업단지	지정	지구단위, G.L
	제7조	일반산업단지	지정	지구단위, G.L
	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	미지정	지구단위, G.L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농공단지	지정	지구단위, G.L
	제8조의3	준산업단지	미지정	지구단위, G.L
	제39조	특수지역	미지정	지구단위, G.L
	제40조의2	공장입지유도지구	미지정	지구단위, G.L

법률	조문	지역·지구	당진시 지정유무	경관설계지침 적용 관련성
	제2조제2호	과밀억제지역	미지정	
	제2조제3호	성장관리지역	미지정	
	제2조제4호	자연보전지역	미지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시설구역	미지정	지구단위 or G.L
	제33조	지원시설구역	미지정	
	제33조	공공시설구역	미지정	
	제33조	녹지구역	미지정	
	제4조제1항제1호	보전산지	지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임업용산지	지정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공익용산지	지정	G.L
	제9조	산지전용제한지역	미지정	
	제25조의2	토석채취제한지역	미지정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사만금사업지역	×	
세인 마사업 국선들 위한 독실업 소하천정비법				G.L
	제2조제2호 제4조	소하천구역 소하천예정지	지정 미지정	
	제4조: 제6조제1항제1호	과밀억제권역	6/1/8	
스트 가기대체원대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성장관리권역		
	제6조제1항제3호	자연보전권역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	G.L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립수목원완충지역	미지정	지구단위, G.L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미지정	
	제8조제1항	습지보호지역	미지정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주변관리지역	미지정	G.L
	제8조제2항	습지개선지역	미지정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	신항만건설예정지역	미지정	지구단위, G.L
시체자스트 호소네케흐 이친 여기 고즈기여	제2조제2호	예정지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주변지역	×	
	제8조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지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미지정	G.L
	제33조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G.L
어촌·어항법	제17조	어항구역	지정	G.L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	연안육역	지정	G.L

법률	조문	지역·지구	당진시 지정유무	경관설계지침 적용 관련성
	제4조	수변구역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제16조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제20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O 크 N	제4조	온천원보호지구	미지정	C.I.
온천법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	미지정	G.L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 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25조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6조	박람희장 조성사업구역	×	
	제4조	국립공원	미지정	G.L
	제4조	도립공원	미지정	G.L
	제4조	군립공원	미지정	G.L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	공원자연보존지구	미지정	G.L
	제18조제1항제2호	공원자연환경지구	미지정	G.L
	제18조제1항제3호	공원마을지구	미지정	G.L
	제18조제1항제6호	공원문화유산지구	미지정	G.L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위험지구	미지정	G.L
	제12조제1항	생태·경관보전지역	미지정	G.L
	제12조제2항제1호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미지정	G.L
	제12조제2항제2호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미지정	G.L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3호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미지정	G.L
	제22조	자연유보지역	미지정	G.L
	제23조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미지정	G.L
	제39조	자연휴식지	미지정	G.L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묘지등설치제한지역	미지정	G.L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시장정비구역	미지정	G.L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 법	제6조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미지정	G.L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	미지정	G.L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지구단위 or
चिख्यादन्धिम	제11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미지정	G.L

법률	조문	지역·지구	당진시 지정유무	경관설계지침 적용 관련성
기트기카시 니즈 II 카이제 코쉬 비르	제6조	전통사찰보존구역	미지정	G.L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미지정	U.L
전파법	제52조제1항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지정	G.L
	제292조	절대보전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3조	상대보전지역		
	제294조	관리보전지역		
	제294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	
	제294조	생태계보전지구		
	제294조	경관보전지구		
	제312조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주차장법	제12조제6항	노외주차장설치제한지역	미지정	G.L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	
	제9조	개발촉진지구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특정지역	지정	G.L
H C	제38조의2	지역종합개발지구	×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지역특화발전특구	미지정	G.L
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	미지정	G.L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	미지정	G.L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	미지정	지구단위 or G.L
초지법	제5조	초지	지정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예정지구	미지정	지구단위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	미지정	지구단위 or G.L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입지	미지정	G.L
	제10조	하천구역	지정	G.L
하천법	제11조	하천예정지	미지정	G.L
	제12조	홍수관리구역	미지정	G.L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지정	G.L
	제4조	수변구역		
	제6조	오염행위 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7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제8조의8	페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제15조의4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제2조제9호	공항구역		
항공법	제2조제16호	장애물 제한표면	×	

법률	조문	지역·지구	당진시 지정유무	경관설계지침 적용 관련성
	제56조	항만재개발사업구역	미지정	지구단위, G.L
항만법	제2조제4호	항만구역	지정	지구단위, G.L
	제42조	항만배후단지	미지정	지구단위, G.L
	제25조	해양보호구역	미지정	G.L
	제25조	해양생물보호구역	미지정	G.L
	제25조	해양생태계보호구역	미지정	G.L
	제25조	해양경관보호구역	미지정	G.L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긴급해양보호구역	미지정	G.L
	제36조	시·도해양보호구역	미지정	G.L
	제36조	시·도해양생물보호구역	미지정	G.L
	제36조	시·도해양생태계보호구역	미지정	G.L
	제36조	시·도해양경관보호구역	미지정	G.L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환경보전해역	미지정	G.L
에 당판성단니집	제15조	특별관리해역	미지정	G.L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대책지역	미지정	G.L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수목원조성예정지	미지정	지구단위, G.L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 구역	미지정	지구단위, G.L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마리나항만구역	미지정	지구단위, G.L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	복합환승센터	미지정	G.L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제5조	제1종 구역 및 제2종 구역	미지정	G.L
법률	제5조	제3종 구역	미지정	G.L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역세권개발구역	미지정	지구단위, G.L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친수구역	×	

# 당진시 경관관련 지구 등의 지정 및 관리

###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운영현황

-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미관지구는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지정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당진시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함
- 경관지구,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아래의 표와 같이 정의 하고 있음
- 현재, 당진시내에는 경관지구, 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필요시에는 지정할 수 있음

### 경관지구, 미관지구의 지정목적

	구 분	지정목적	비고
	자연경관지구	산, 구릉지 등 도시의 자연경관과 풍치 유지	
경관 지구	수변경관지구	주요 수계의 수변자연경관의 보호, 유지	시행령 제31조
	시가지경관지구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 도시경관의 보 호	,
	중심미관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	
미관 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 을 유지·관리	시행령 제31조
	일반미관지구	중심, 역사문화미관지구외의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 리	The state of the s

출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2009.06.26 제21565호 기준

#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관리의 기본방향

- 현재, 당진시내에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정목적의 적합성, 규제의 적절 성과 보상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으로 중장기적인 차원의 단계적인 접근이 필 요
- 따라서,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지정시에는 시민의 인식과 공감대 형성에 기반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적절한 보상과 규제 등을 고려하여야 함
-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시에는, 규제 중심의 관리방안에 머무르지 말고 경관 유도 방식의 관리를 추가적용하여 다양하고 변화하는 도시경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특정경관계획 수립을 유도하여 체계적인 경관보전·형성 및 관리가 이 루어지도록 함

# 경관관련 지구등의 세분 검토(안)

- 본 기본경관계획에서 제안한 경관중점관리구역을 대상으로 경관지구미관지구로 지정을 검토함
- 자연경관과 관련하여서는 당진시 조망의 대표격인 아미산 일원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을 검토 함
- 또한,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관련하여 당진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덕·수청지구에 대한 일부구역을 경관지구로 지정을 검토함

	구 분	검토내용	비고
	자연경관지구	아미산 일원	
경관	수변경관지구	당진천	
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당진동 구시가지 일원 대덕수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일원 석문산업단지 삽교호 관광지	경관중점관리구역 도면 참조
미관	중심미관지구	당진시청사 가로 일원	
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면천읍성 일원	

# 향후 미관지구의 경관관리방안

- 미관지구에서의 경관관리 방향설정 및 경관관리의 내용 제시
- 미관지구에서의 체크리스트 항목은 건축경관설계 지침을 따름
- 미관지구의 건축심의 기준 및 건축심의 운영방안 제시
- 심의신청 시 체크리스트와 조치내용의 제출
- 조치내용은 도식화 하여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 주변여건 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함

# 미관지구의 경관관리 항목

구분	주요관리항목
건축물에 관한 사항	건축선, 건축배치, 건축형태, 건축재료, 건축외관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진입로, 주차장, 녹지, 수종, 포장등에 대한 사항
광고물에 관한 사항	건축설계시 광고물 설치위치 및 설치 규모를 반영하도록 제시
공작물에 관한 사항	경관관리 내용의 제시
색채에 관한 사항	건축외장재에 따른 색채에 대한 경관관리 내용 제시

# 참고, 당진시 도시계획조례의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별표 25]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장례예식장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기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에 한한다)
-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3. 경관조례의 개정

# 경관조례개정의 기본방향

- 경관법의 자자체 위임사항 보완
-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외 필요사항은 새로운 장으로 정리
- 경관사업, 경관협정 등 추진과 실행을 위한 근거 마련
- 특정 권역별 특성을 살리기 위한 경관중점관리구역에 대한 세부조항 마련
- 경관관련 법제도 등 국계법을 비롯한 지역,지구, 구역에 대한 근거조항 마련
- 아직까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경관협정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 경관조례에 추가할 내용

구분	개정사항
총칙	<ul> <li>목적 수정</li> <li>조례사용 용어의 정의 정리</li> <li>기본계획에 의거한 경관형성 추진전략 보완</li> <li>시장 등 경관관련 자의 책무 규정</li> <li>재산권과 공익과의 관계 규정</li> <li>관련법 및 조례와의 관계 보완</li> </ul>
경관계획	<ul> <li>경관계획의 내용 구체화</li> <li>경관계획 수립제안서 내용 구체화(주민 제안 포함)</li> <li>경관중점지구의 지정, 경관관리방향, 설계지침, 운영방안에 관한 내용</li> </ul>
경관사업	<ul> <li>경관사업의 대상 구체화</li> <li>경관사업과 공공기관과의 관련성 규정</li> <li>경관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서 제시</li> <li>경관사업의 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보완</li> </ul>
경관협정	<ul><li> 경관협정 체결자 범위 확대</li><li> 경관협정 내용의 구체화</li><li> 경관협정에 대한 내용, 절차, 지원에 관한 사항 보완</li></ul>
경관위원회	• 경관심의 대상 구체화 • 경관자문대상 구체화
공동위원회	•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보완
경관추진 활동주체	• 경관추진 활동단체에 대한 승인 사항 추가
경관형성을 위한 시책	• 경관상의 시상, 지원, 계몽에 관한 사항 추가

당진시 경관조례(현행)	당진시 경관조례(개정)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당진시의 디자인 창조 도시건설,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 및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의 자연을 보존하고, 당진의 상징을 만들고, 당진다움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경관"이란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등 자연과 인공에 따라 경관적가치가 높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관을 말한다.  2. "가이드라인"이란 경관향상을 위하여 건축물, 야간경관, 옥외 광고물, 가설 울타리 등의 형태ㆍ재료ㆍ색상 등에 대한 시행 지침을 말한다.  3. "야간경관"이란 야간의 경관적 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연의 빛과 인공조명이 비추어져 형성되는 야간시간 대의 경관을 말한다.  4. "특화경관"이란 우리시 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경관을 말한다.  5. "도시경관디자인 대상 시설물"이란 별표 1의 시설물을 말한다.  6. "경관협정"이란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 1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인가를 얻어 체결되는 협정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경관"이란 경관법 제2조의 정의하고 있는 대상 및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관리대상을 말한다. 2. "경관관리"란 경관요소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가치 있게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3. "경관요소"란 경관법 제2조의 정의에 의해 이루어진 경관을 만들어내는 개개의 구성물을 말한다. 4. "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5. "경관요소"란 경관법 제2조의 정의에 의해 의해 이루어 진 경관을 만들어내는 개개의 구성물을 말한다. 6. "공공공간"이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 및 그 안에 부속되어 있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7. "공공시설물"이란 공공기관이 공공의 이용을 목적으로 조성설차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이에 부속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8. "공간환경디자인"이란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여 도시환경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9. "경관중점관리구역"이란 시장이 주점적으로 경관관리하여한 할 필요가 있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10. "경관설계지침"이란 경관향상을 위하여 경관자원을 보호하고, 가꾸어가기 위한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건축및 개발행위시 고려되어야 할 경관요소별 원칙적인 경관유도기준을 말한다. 11. "해안경관가이드라인"이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수립에 적용하기 위하여 해안권에서의 개발사업이 주변의 해안경관과 어우러져 친환경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관유도기준을 말한다. 12. "야간경관"이란 야간의 경관적 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연의 빛과 인공조명이 비추어져 형성되는 야간시간대의 경관을 말한다.

당진시 경관조례(현행)	당진시 경관조례(개정)
	<ul> <li>14. "도시경관디자인 대상 시설물"이란 별표 1의 시설물을 말한다.</li> <li>15. "경관협정"이란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시내 일정지역 및 마을 등을 대상으로 한 쾌적한 환경과 이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하여 주민상호간 의견을 모아 체결하는 자율적인 협정을 말한다.</li> </ul>
	제3조(경관형성 추진전략) 당진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이름답고 쾌적한 환경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경관법」(이하 "법"이라한다)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기존의 수림지형조망 등의 자연을 가급적 보전하고 최 대한 살린다. 2. 다양한 녹지디자인을 통해 녹지량을 최대한 확보한다. 3. 도시형·단위형·연결형 등의 녹지축을 조성하도록 한다. 4. 기존 하천정비, 수로조성, 테마형 수공간 등의 건강한 친수 공간을 만든다. 5. 보행길·자전거길·운동공간 등을 조성하여 언제나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6. 친환경적 기법을 활용한 건강한 건축물을 조성한다. 7. 가로 및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언제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8. 건축물이나 시설물·구조물 등을 예술작품화 한다. 9. 공개공자가로 ·거점부를 활용하여 공공예술·공간을 조성한다. 10.상징거점상징가로상징도시를 통해 당진시의 상징을 만든다. 11. 색채야간계절 등 시각적인 요소를 차별화하여 표정이 있는 도시를 만든다.
제3조(경관관리) 당진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관 가이드라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장건축물 색채  2. 야간경관조명  3. 건축물 미관협의  4. 가설울타리 등 디자인  5. 옥외광고물 디자인  6. 그 밖에 시장이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기존건축물의 경관관리) 기존 건축물증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이하"경관저해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자에게 정비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당진시 경관조례(현행)	당진시 경관조례(개정)
	제4조(시장등의 책무) ① 시장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은 우수한 경관조성에 필요한 시책 강구와 경관관리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공공건축물, 도로, 공원 기타 공공시설의 정비등 시에서 발주하거나 소유자가 되는 공공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시경관형성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시민 및 사업자의 도시경관형성에 관한 지식의보급및 의식고양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② 사업자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는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스스로 사업활동이 지역의 양호한 경관형성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고 사업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주변경관을 고려하고 시가시행하는 경관형성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2. 개발행위를 하고자하는 지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고 려하여 지역의 매력 있는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시민은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각자가 양호한 경관형성의담당자로서 양호한 경관형성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한다. 2. 시민은 시에서 시행하는 경관관리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한다. 3. 시민은 양호한 경관형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관의 공공적 가치가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건축물·시설물 및 공간환경을 유지하고 관리 하여야한다.
	제5조(재산권의 존중 및 공익과의 관계) 이 조례를 운용함에 있어서 관계자의 재산권 및 그 밖의 이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공공사업 기타 공익과의 조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제도의 활용) 시장은 경관형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관법으로 정하는 것 이외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헌법률, 건축기본법,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거한 관련제도의 활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기관등에 대한 협력요청 등) 시장은 양호한 경관 형성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기관, 상위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 체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당진시 경관조례(현행)	당진시 경관조례(개정)
	제8조(적용범위) 시 관할구역안의 경관과 관련된 시설물의 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개별법에서 경관 에 대하여 따로 정하는 사항은 개별법을 따른다.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라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제2장 경관계획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시의 도시경관 보전과 수준항상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기본계획, 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된 분야별 권역별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 중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 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정비하여야 한다. ③ 「경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제안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경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당진 시의 경관을 보전, 관리, 형성하기 위하여 당진시 기본경 관계획을 수립하며, 수립하는 경관계획에 대하여 5년단위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정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관계전문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의 구역내의 각 지역의 경관특성에 따라 양호한 경관형성을 추진하기 위해 경관계획에 의거한 방침으로서 당진시 경관설계지침을 정하도록 한다. ③ 시민의 제안과 시장이 경관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지구 및 분야에 대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경관계획에 있어서 지형 및 지물 등의 지리적조건, 토지이용의 상황, 경관상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경관계획구역을 구분하는 지구 및 지구구분과 관련된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한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할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당진시 경관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할때에는 시민에게 고시하고 그 내용 등에 대해서 시민 등에게 주지하도록 한다. ⑦ 2항의 규정은 경관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⑧ 「경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제안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경관계획의 내용) ①시장은 경관계획에 있어서 다음 사항중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1. 경관법에서 정하는 사항 2. 경관계획구역(당진시 전 지역)과 경관중점관리구역 3. 경관형성 방침과 경관설계지침

당진시 경관조례(현행)	당진시 경관조례(개정)
	<ul> <li>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li>② 영 제3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li> <li>1. 중・장기적 경관시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li> <li>2. 경관계획 수립내용의 실현방안에 관한 사항(법정계획이나 조례로 할 사항, 협정이나 시업으로 할 사항,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할 사항 등으로 구분한다)</li> <li>3. 경관지구, 미관지구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li> <li>4.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li> <li>5. 경관협정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li> <li>6. 대규모 건축물・개발사업 및 공공사업의 사전경관협의에 관한 사항</li> <li>7. 경관관련 주민참여 활성화방안에 관한 사항</li> <li>8.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요소 발굴 및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li> <li>9.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및 우선해제지구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li> <li>10. 도시재생사업 등 개발사업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li> <li>11. 지역 특성화사업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li> <li>12. 공공사업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li> <li>13. 주민생활과 연계된 공원 및 녹지공간조성에 관한 사항</li> <li>14. 그 밖에 경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ul>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영 제2조제 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계획의 대상지역 및 범위 3.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4.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5.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6.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7. 경관기본구상도 및 경관계획도(1/5,000) 8. 경관시뮬레이션 및 현황사진	제12조(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제안)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특정지역 또는 특정요소에 대해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2. 경관사업 집행방안 3. 관련 도면(경관현황도·경관구상도·경관계획도 및 경관설계지침도 등) 4. 그 밖에 경관계획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5. 경관계획의 수립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수립의 제안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경관관련 법령 및 조례와의 부합성 여부

당진시 경관조례(현행)	당진시 경관조례(개정)
	<ul> <li>3. 기존에 수립된 경관관련 계획, 지침과의 연계성 및 부합성 여부</li> <li>4. 주변 환경 및 공간과의 조화성 여부</li> <li>5.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여부(재산권침해등)</li> <li>6. 그 밖의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li> <li>③ 시장은 제1항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하여야한다.</li> <li>④ 시장은 경관계획에 대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당진시경관위원회에 해당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제출해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li> </ul>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야별, 권역별 경관계획  2. 용도지역·지구 주요 구역별 주요 가로별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3. 문화유산의 보전 및 지역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4. 중·장기적 도시경관 시책의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5. 건축물의 경관개선 관리에 관한 사항  6. 구시가지 경관 향상 방안  7. 특화 경관 형성 방안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 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주민등에 의한 계획 제안) ① 특정지역에 대한 경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단체는 양호한 도시경관의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한다. ② 특정지역에 대해 일관성 있고 양호한 경관을 형성해야 하는 5000㎡가 넘는 것에 대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 권 또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요건을 갖춘 지 상권이나 임차권으로 가진 사람이 협력하여 시장에게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도시만들기의 추진을 꾀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활동법인 또는 기업은 시장에게 경관계획수립 또는 변경을 건의할 수 있다
	제14조(경관중점관리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당진시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행위제한을특히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을 경관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특히 양호한 경관형성에 필요한 구역(이하 경관중점관리구역 이라한다)에 있어서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한 방침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및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한 기준(이하 경관설계지침 이라한다)을 해당 구역마다 정하도록 한다. ③ 경관중점관리구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④ 전항의 규정은 경관중점관리구역의 변경 및 해제에 대해서 도 준용한다.

당진시 경관조례(현행)	당진시 경관조례(개정)
	제15조 (경관중점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경관중점관리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별 경관지침을 준수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한다.

-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10 제16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10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 는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시 정뉴스 등을 통하여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 한 개최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 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 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및 자료제출자의 수당·여비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당진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 례, 를 준용한다.
  - ⑤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할 수 있다.
  - 1. 당해 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 2. 당해 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 3. 당해 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 는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시 정뉴스 등을 통하여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 한 개최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 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 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및 자료제출자의 수당·여비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용역수 행자, 공무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장 경관사업

#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 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공공시설물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 2. 경관지구·미관지구 안에서의 경관정비에 관한 사업
- 3. 건축물의 녹화사업을 위한 옥상조경 등
- 4. 하천 등 수변경관에 관한 사업
- 5. 공업지역 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
- 6.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 7.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 8. 도시 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
- 9.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장 경관사업

- 제17(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사업대상별 경관사업, 시행자별 경관 사업, 공공사업과 연계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 1. 사업대상별 경관사업은 경관계획에 의거하여 유형별 경과사업과 요소별 경과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유형별 경관사업은 특정 경관지역 또는 특정 경관유 형에 대한 미시적 차원의 경관에 대한 사업으로서 시 가지 경관사업, 가로 도로경관사업, 수변경관사업, 녹 지경과사업, 역사문화경과사업, 관문경과사업, 조망경 관사업 등이 있다.
    - -요소별 경관사업은 경관을 구성하고 있는 특정 요소 를 통한 사업으로서 건축경관사업, 색채경관사업, 야 간경관사업, 시설물디자인 개선사업,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 등이 있다.
  - 2. 시행자별 경관사업은 공공주도형 경관사업, 민관협동형 경관사업, 민간주도형 경관사업이 있다.

 당진시 경관조례(현행)	당진시 경관조례(개정)
	-공공주도형 경관사업은 행정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특화가로 조성, 가로정비 옥외광고물 정비, 시설물정비, 야간경관 조성 사업 등이 있다민관협동형 경관사업은 행정과 민간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광고물 정비사업, 전면공지 조성사업, 테마마을만들기 사업 등이 있으며 경관협정사업과 유사하다민간주도형 경관사업은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가 제안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집앞 청소하기 운동, 담장허물기 사업 등이 있다. 3. 공공사업과 연계사업은 경관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기보다는 타 부서의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2개 이상의 부서가함께 추진하는 공동사업으로서, 공공시설, 공공건축, 공공공간, 도로, 하천, 공원, 하수도, 교량 등의 공공정비및 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일체적 설계 및 상호간의 연계를 말한다.
	제18(공공사업과 관련된 경관형성) ① 시장은 공공사업, 공 공시설 건축 등으로 시의 경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이하 "공공사업 등"이라 한다)에 대한 경관형성을 위한 지침 (이하 "공공사업 등 경관형성지침 "이라 한다. )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공공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공사업 등 경관 형 성지침을 준수한다. 2. 시장은 국가, 다른 지방 자치 단체 기타 정부 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할 때, 공공사업 등 경관 형성 지침을 고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공공사업은 경관부서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일체적 설 계 및 상호간의 연계를 도모한다. 1. 사업부서와 경관부서가 다르므로 상호간 경관협의가 가 능하도록 경관부서와 사업부서간의 협의체를 구성하도 록 한다. 2. 연계 가능한 사업은 지자체에서 예산결정이 끝난 후에 각 부서별로 결정된 추진사업과 추진단계, 추진내용을 경관부서에 전달하도록 한다. 3. 경관부서에서는 각 사업을 기본계획, 실시설계, 조성공 사의 단계별로 구분하여 적용 가능한 추진내용과 경관 지침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적용시기를 제시하도록 한 다.

인하기 됩니다 - 11/스크리	면에기 및에 어제(기에)
당진시 경관조례(현행)	당진시 경관소례(개정) 제19(경관사업의 선정절차) ① 경관사업의 선정은 사업의 시급성, 사업의 파급성, 사업의 중요성, 관련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② 경관사업의 선정기준은 경관형성의 기여도, 지역에의 기여도, 투자의 적절성, 사업추진과정, 시행의지 등의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③ 경관사업의 선정절차는 사업공고, 신청접수, 제안서 심사, 경관사업의 선정절차는 사업공고, 신청접수, 제안서 심사, 경관사업의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도록 한다. ④ 경관위원회에서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⑤ 경관사업의 평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 따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비 조달방안 3. 사업의 관리·운영 계획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사업의 기대효과 7. 사업대상구간 현황 및 전경 8. 사업의 시기 및 기간	제2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 따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명칭 2. 경관사업의 위치 및 규모(범위) 3. 경관사업의 기간 4. 경관사업의 수법 5. 경관사업의 추진내용 - 일반 현황 - 사업신청 유형의 관련 현황 - 특화전략 - 사업항목 및 사업내용 6. 경관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7. 사업의 추진공정 8. 소용예산 및 재원조달계획 9. 사업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0. 사업계획 관련도서(위치도, 근원경 현장사진 포함) 12.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진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경관사업의 수립·시행·사후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경관사업에 대한 협의 및 건의사항 4. 시장은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진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위원은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시민단체 및 경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행자, 사업 관련 공무원, 경관사업 지역 선거구로 하는 시의원, 사업지역내 공공시설물 관리자 등에서 시

항

③ 공공사업과 연계사업은 사업부서와 경관부서가 다르므

### 당진시 경관조례(현행)

- ③ 협의체의 위원은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시민단체 및 경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⑤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 다.
- ⑥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 고 그 의장이 된다.
- (7)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 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
- ⑧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 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혐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 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⑩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 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당진시 경관조례(개정)

- 로 상호간 경관협의가 가능하도록 경관부서와 사업부 서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협의체는 경관사업의 전반에 결쳐 일관성있는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④ 협의체는 경관사업계획에 관한 의견조정, 경관사업의 추진, 사업완료 후의 유지관리,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 항, 협의 및 건의사항, 기타 규칙 등을 정할 수 있다.
- ⑤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⑥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
- ⑦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 고 그 의장이 된다.
-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위원장 및 부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 ⑨ 협의체 위원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을 완료할 때가지로 하고, 위워이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 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⑩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 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① 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 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① 협의체의 의결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 은 협의체 운영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하을 갖는다.
- ①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4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제22조(재정지원 및 감독)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
  -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
-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
-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 용

당진시 경관조례(현행)	당진시 경관조례(개정)
사업비	<ul> <li>3. 그 밖에 시장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비</li> <li>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의 감독을 위하여 「당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li> <li>③ 융자 등 그 밖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li> </ul>
제13조(평가) ①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 할 수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평가) ①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었을때에는 대상지역의 이용 자 및 주민, 사업에 참여한 전문가, 해당 사업의 담당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결과 보고, 심충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경관협정	제4장 경관협정
제14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4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로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경관협정을 위임받은 자 2. 경관계획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공익법인(LH공사한국도로공사충남개발공사 및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는 법인 등)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이행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 ·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5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계획 및 경관사업에서 협정을 체결하도록 제시한사항 - 경관사업 지역·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당진시 경관조례(현행)	당진시 경관조례(개정)
제16조(경관협정서의 내용)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서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ul> <li>담장 허물기 및 공개녹지 조성 등에 관한 사항</li> <li>건축물의 옥상 등 녹화에 관한 사항</li> <li>쓰레기 배출, 위험물 처리, 청소 등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li> <li>야간조명, 식재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li> <li>가로별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li> <li>경관관련 다른 법률에 정한 경관요소의 경관관리 실행 방안에 관한 사항</li> <li>그 밖에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li> <li>3. 경관협정의 이행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li> <li>제26조(경관협정서의 내용)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서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li> <li>1. 경관협정 폐지시 보조금, 지원금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li> <li>2. 협정의 의무, 권리, 구성 등에 관한 사항</li> <li>3.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li> <li>4.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li> <li>5.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li> <li>6.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li> <li>7. 경관협정 관련 도서</li> <li>8. 경관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li> <li>9. 경관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li> <li>10. 경관협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li> <li>10. 경관협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li> <li>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ul>
제1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 따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시 장이 정하는 사항	제2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체결자의 전원합의 의사표시 사항 2. 경관협정운영회의 조직과 위원의 임기 3. 경관협정운영회의 회칙 4. 설립신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	제28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

### 당진시 경관조례(현행)

### 당진시 경관조례(개정)

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 거서류
-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 제19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2 제29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2 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 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 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련 기관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워 할 수 있다.
-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 **제30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 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1.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 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진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 빙서류
-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 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 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 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련 기관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 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1.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 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진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경관협정에 따른 추진 사업명
-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 3. 사업비 산출근거
- 4. 사업비 조달 계획
-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 6. 유지관리 계획
-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 제21조(지원대상 및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 제31조(지원대상 및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사업명
- 2. 사업의 위치 및 규모(범위)
- 3.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 4. 사업비 산출내역서
- 5. 사업비 조달방안
- 6.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 7. 유지관리 계획
- 8. 사업계획 관련 도서
-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 당진시 경관조례(현행)

-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 거나 폐지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 협정 관련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 당진시 경관조례(개정)

- 제32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경관협정에 대한 평가는 제23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를 준용한다.
  - ②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주민, 사업에 참여한 전문가, 해당사업의 담당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결과 보고, 심층면담 및 설문조사를 분석결과를 경관 협정 관련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수 있다.

### 제5장 경관위원회

- 제23조(경관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3조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당전시 경관위원회(이하"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 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 ④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 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다
  - 1.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 2. 시 소속 공무원 또는 경관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 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이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자
  - ⑤ 경관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채움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명을 둘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⑦ 경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 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관계기관의 장 등에 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경관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제5장 경관위원회

- 제33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당진시 경 관위원회(이하"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4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 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 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어야 하다
  - 1.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 2. 시 소속 공무원 또는 경관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워
  -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 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자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④ 경관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채움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명을 둘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⑥ 경관위원회 간사는 경관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경관 업무 주무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회의록 또는 심의 및 자문일지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 ⑦ 경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 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관계기관의 장 등에

당진시 경관조례(현행)	당진시 경관조례(개정)
	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경관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35조(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 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는 부위원장을 두고 소외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도록 한다. ④ 경관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⑤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운영방법에 준한다.
	제36조(자료제출 등)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7조(비밀준수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회의) ①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제38조(회의) ①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 제24조(회의) ①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 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 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 ⑤ 회의록은 회의 때마다 작성 보관 관리한다.
  - ⑥ 경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진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 에 38조(회의) ①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 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 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⑥ 회의록은 회의 때마다 작성 보관 관리한다.
- ⑦ 경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지원 수 있다. (8) 이 조례에 규정된 사장 이외에 경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관위원회의 의견을 가치 위원 장이 성한다.  제25조(심의대상) ① 영 제17조제3호에 따른 사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산서업의 중인 및 정관업정의 인가를 할 때 정관위원 의외 실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의의 실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의 실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의 실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의 실의를 받도록 경한 사항 의 급환위원회의 실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정관위원회의 실의를 받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정관위원회의 실의를 받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6조에 따라 나항 라를 원관계획에서 정관위원회의 실의를 받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6조에 따라 나항 충을 지원받는 경관사업의 의실의를 받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6조에 따라 나항 등을 지원받는 경관사업의 의실의를 받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6조에 따라 나용 등을 지원받는 경관사업의 의실을 받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6조에 따라 나용 등을 지원받는 경관사업의 의실을 받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6조에 따라 나용 등을 지원받이는 경관사업의 의실을 받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6조에 따라 나용 등을 지원받이는 경관사업의 의실을 받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6조에 따라 나용 등을 지원받이 관한 사항 의 결상에 관한 사항 3. 경관검관리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5. 장관위원회의 소의 대한 사항 5. 장관위원회의 소의 의원에 관한 사항 5. 장관위원회의 소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경반에 관한 사항 9. 당로의 전체 등에 관한 사항 9. 당로의 전체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0. 「주택법, 에 따른 건축물의 경원에 관한 사항 9. 당권시 도시계획조례, 에 따른 건축물의 경반에 관한 사항 9. 당권시 도시계획조례, 에 따른 건축물의 경반에 관한 사항 9. 당권시 도시계획조례, 에 따른 건축물의 경반에 관한 사항 9. 당권시 도시계획조례, 에 따른 건축물의 경반에 관한 사항 9. 당권시 도시계획조례, 에 따른 건축물의 경반에 관한 사항 10. 「주택법, 에 따른 주택권성시업계획수인 대상 한사장 11. 전환경환경자구 관용하임기들은 포함한 경우에 한한 사망 11. 단관관장구구 대한사와 12. 고학에 경환의 보전 관관 및 일반산업단적 내 공장 건축물의 의원 및 학자는 12. 도구원 및 목지를 제한되어 등인 제급비터 이상인 경우 경환에 관한 사항 12. 도구원 및 목지를 위원회의 실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13. 도구원 및 목지를 위원회의 실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14. 다른 조매에서 경관위원회의 실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전환경환원회의 실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전환경환원회의 실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14. 다른 조매에서 경관위원회의 실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전환경환경의 전환경환 경우에 한단시한 사항 13. 도구원 및 목지를 제원의 조성면적이 5만 제급비터 이상인 경우 경환에 관한 사항 14. 다른 조매에서 경관위원회의 실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전환경환경의 보험 보험 사항 14. 다른 조매에서 경환으로 및 무게관원의 조성면적이 5만 제곱비터 이상인 경우 경환에 관한 사항 14. 다른 조매에서 경관위원회의 실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전환경환경 및 구제공원의 조성면적의 5만 제곱리 막은 기관 기관 한다가 내형 전환 사항 2. 전환경환경의 전환경환 경우가 관용자원 및 기관 환경 보험 전환으로 제원 기관 보험 사항 2. 조건원 관계의 관한 사항 2. 조건원 원자의 관계관 전환 사항 2. 조건원 관계의 조성면적 기관 관계관 전환 사항 2. 조건원 원자의 관계관 전환 사항 2. 조건원 원자의 관계관 전환으로 제원 기관 전환으로 제원 기관 관계관 관계관 관계관 관계관 관계관 관계관 관계관 관계관 관계관		
*************************************	당진시 경관조례(현행)	당진시 경관조례(개정)
각 호와 같다. 1. 경관시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 회의 심의를 받도록 경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경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별표 1의 도시경관대상시설물의 디자인, 야간정관, 색체 등 및 가로환경 조성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5. 「당건시 건축 조례」제6조제11항에 따라 당건시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6. 용증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대형건축물의 형례, 여간경관・색채 등에 관한 사항 7. 중로 20m이상의 도로반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형례, 색채 등에 관한 사항 8.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창고 건축물의 형례, 색채 등에 관한 사항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내물,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10.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11. 자연환경보존지구는 제외한다는 관광휴양개발전종자구・복합개발진종자구(한공휴양기능을 포함한 경우에 한한다)내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12. 지수인공자구(관광휴양기능을 포함한 경우에 한한다)내 건축하는 건축물의 보면 나사항 기관하는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12. 지수인공자구(관광휴양기능을 포함한 경우에 한한다)내 건축하는 건축물 및 구제공원의 보건 관리 및 일반산업단지 내 공장 건축물의 외반 및 디자인 등에 관한사항 13. 그 밖에 경관의 보건 관리 및 혈상에 관한 사항으로 서시장이 인정 하는 사항 14. 지수에 건축하는 건축물 및 주제공원의 조선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경관에 관한 사항 1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대물, 제15조에 따라 무입하여 사항 가항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16.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한사항 17. "당관진홍법」에 따른 관생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의 경관에 관한 사항 18. "도로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원 당관자 가는 보존자구(증요사설물보존자구는 제외한다) 관광휴양개발전종자구 부합개발진종자구(관광휴양기능을 포함한 경우에 한한다)내에 건축하는 건축물 및 주제공원의 조선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경관에 관한 사항 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사항 한다'에 대한 수당 건축물 기상에 대한 사항 1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기상인 경우 경관에 관한 사항 15. "동주(학교학 및 보관 사항 등에 관한 사항 기상 관계원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기상인 경우 경관에 관한 사항 인상인 경우 경관에 관한 사항 인상인 경우 경관에 관한 사항 기상인 경우 경관에 관한 사항 가장인 기상인 기상인 기상인 기상인 기상인 기상인 기상인 기상인 기상인 기상	장이 정한다.	⑧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별표 1의 도시경관대상시설물의 디자인, 야간경관, 색채 등 및 가로환경 조성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5. 「당진시 건축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당진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사항  6. 8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대형건축물의 형태・야간경관・색채 등에 관한 사항  7. 중로 20m이상의 도로변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형태, 색채 등에 관한 사항  8.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창고 건축물의외관 디자인 및 색채에 관한 사항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10.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11. 자연환경보전지역・경관지구・미관지구・보존지구(중요시설물보존지구는 제외한다)・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공화가(관광휴양기능을 포함한 경우에 한한다)내에 건축하는 건축물  12.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내 공장 건축물의외관 및 디자인 등에 관한사항  1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인정 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 단체의 장은 심의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관사업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경관중점관리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4. 경관중점관리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5. 경관위원회의 자문시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결정한 사항 6. 「건축법 시행령」제5조제4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7. 「당진시 건축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당진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하는 건축물의 경관에관한사항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른지구단위계획 중 경관에관한사항 9. 「당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건축물의 경관에관한사항 10. 「주택법」에 따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 11. 「관광진흥법」에 따른관광지및관광단지조성사업의경관에관한사항 12. 자연환경보전지역·경관지구·미관지구·보존지구(중요시설물보존지구는제외한다)·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복합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기능을 포함한경우에한한다)내에건축하는건축물 13. 「도시공원및 녹지등에관한법률」제15조에따른생활권공원및 주제공원의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이상인경우경관에관한사항 14. 다른조례에서경관위원회의심의를받도록규정한사항

당진시 경관조례(현행)	당진시 경관조례(개정)
사업발주 이전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당진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구조 및 피난분과위원회 심의를 제외한다) 2. 당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도시계획시설 및 사업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현상설계 당선작	17. 건축물 및 가로등의 야간조명에 관한 사항 18.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야간경관, 색채 등 및 가로환경 조성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19. 개발사업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20. 공공사업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21. 경관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22. 미관지구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3. 경관협정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4. 특정경관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5. 경관의 보존, 관리, 형성을 위한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26. 대규모 토목사업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7. 경관사업 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28. 주민제안 등의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9. 경관형성을 저해하는 물건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0. 경관추진 활동단체의 승인에 관한 사항 31. 8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대형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32. 중로 20m이상의 도로변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33.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창고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34. 높이 10미터 이상인 상징조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35.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내 공장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3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 써 시장이 인정 하는 사항 20.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 단체의 장은 심의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이전 2. 그 밖에 사업은 기본계획 및 디자인 확정 이전 또는 사업발주 이전 30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당전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구조 및 피난분과위원회 심의를 제외한다) 2. 당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도시계획시설 및 사업

당진시 경관조례(현행)	당진시 경관조례(개정)
제26조(자문대상)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에 자문하도록 규정한 사항 3. 시의 경관관련 개선사업 및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4. 역사문화자원의 야간경관조명 설치에 관한 사항 5. 간판시범거리의 옥외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경관에 관한 사항 7. 연면적 3,000㎡이상 15,000㎡ 미만의 공장 및 창고의 건축물 8. 높이 10미터 이상인 상징조형물의 형태・야간경관・색채에 관한 사항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생활권공원 및 주제공원의 조성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경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 서 시장이 신청하는 사항	제40조(자문대상)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구조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에 자문하도록 규정한 사항 4. 시의 경관관련 개선사업 및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소위원회) ① 제23조에 따라 두는 경관위원회에 도시경관과 관련된 심의 또는 자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7명이내의 전문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운영방법에 준한다.	
제2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 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4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6장 공동위원회
제29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공	제42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0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려면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당진시 경관조례(현행)	당진시 경관조례(개정)
동으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진 시경관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구성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영 제15조에 따른 위원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경관위원회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43조(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경관위원회 위원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경관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경관추진 활동단체
	제44조 (경관추진 활동단체의 승인) ① 경관계획 수립구역 내에서 경관형성에 기여하는 자주적인 활동을 행하는 단체 (이하「경관 추진 활동단체」라고 한다. )는, 규칙으로 정하는바에 의해 해당 경관추진 활동단체의 인정을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추진 활동단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것이나 해당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경관추진 활동단체의 활동내용이 경관형성에 도움이 될 것 2. 경관추진 활동단체의 활동내용이 일정 기간동안 지속이 가능한 것 3. 경관추진 활동단체의 활동내용이 다른 시민 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 ③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경관추진 활동단체를 인정을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한다. ④ 시장은 경관추진 활동단체를 인정한 때는, 그 취지를 공표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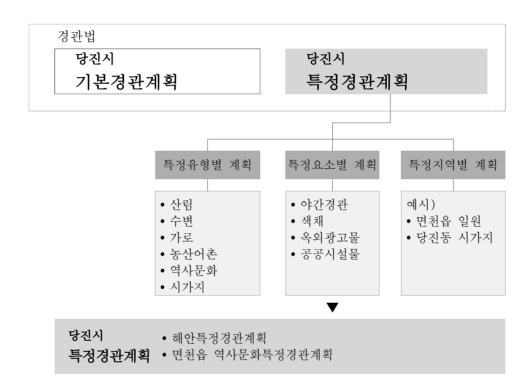
당진시 경관조례(현행)	당진시 경관조례(개정)
	제45조 (경관추진 활동단체의 폐지) ① 앞의 사항 제2항의 인정을 받은 경관추진 활동단체(이하「경관추진 활동단체」 라고한다.)가 경관추진 활동단체를 폐지할 때는, 그 취지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었던 때는, 그 취 지를 공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46조 (경관추진 활동단체의 취소) ① 시장은, 경관추진 활동단체가 제42조제2항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취소할 때는, 그 취지를 공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8장 경관형성을 위한 시책
	제47조(경관상의 시상) ① 시장은 이름다운 경관만들기 사업에 주민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경관상을 시상할 수 있다. 1.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ㆍ시설물과 경관사업의 설계자ㆍ시공자 및 소유자 2. 이름다운 경관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인 활동 및 지원하는 우수 경관관리 단체 또는 개인 등 3. 우수 경관시책ㆍ경관사업 및 디자인의 제안자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상의 대상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며, 시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포 상조례」에 따른다
	제48조(지원) 시장은 양호한 경관형성 및 추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9조(계몽) 시장은 시민, 사업자, 행정가가 시의 양호한 경 관형성에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 정보제공, 경 관학습 장소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경관형성을 저해하는 물건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경관 계획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 는 공작물 등이 양호한 경관형성을 현저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손상, 부식 등에 의해 외관의 대부분이 손상되어 있는 것.

당진시 경관조례(현행)	당진시 경관조례(개정)
	2. 외관이 손상되어 있는 상황을 국도 또는 보행로 또는 철로에 있어서 운행하는 차량에서 용이하게 인식되는 것3. 실제로 사용 또는 유지 관리를 되어 있지 않는 것②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요청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함과 동시에, 관련 동에 협력을 구하도록 한다.
제6장 보칙	제9장 보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것, 「당진시 건축조례」에 따라 당진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심의 등 절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것, 「당진시 건축조례」에 따라 당진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심의 등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4.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관리

# 특정경관계획

• 기본경관계획은 관할지역 전부를 대상으로 경관계획의 목표를 제시하고, 경관권역, 축, 거점 등 경관관리단위를 설정하며,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 반면 특정경관계획은 관할지역의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경관유형(산림, 수변, 가로, 농산어촌, 역사문화, 시가지 등), 특정한 경관요소(야간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등)를 대상으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임



- 당진시는 해안경관의 체계적인 경관의 보전·형성 및 관리를 위한 해안특정경관계획과 면천읍 일대에 역사자원을 중심으로 한 면천읍 역사문화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함
- 당진시는 개발압력이 높아서 당진의 경관훼손이 심화되고 있고, 당진시청사의 이전으로 인하여 당진동 구시가지에 대한 특정경관계획 수립이 시급함(특정경관계획 제안 필요)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은 해당 지역에 맞는 경관형성 및 관리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당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대상에 해당되는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수립을 도모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구 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비고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ul> <li>용도지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li> <li>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제3조)</li> <li>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li> <li>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3조)</li> <li>대지조성사업지구(주택법 제16조)</li> <li>산업단지, 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 호,12호)</li> <li>관광단지, 관광특구(관광진흥법 제70조)</li> <li>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li> <li>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li> <li>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사업시행 후 10년 경과한 지역</li> </ul>	법 제51조
반안 법률	<ul> <li>시범도시</li> <li>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li> <li>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li> <li>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열람공고된 지역</li> <li>공장, 학교, 군부대, 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지와 그 주변지역</li> <li>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li> <li>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li> <li>양호한 환경의 보호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li> </ul>	영 제43조
당진시 도시 계획 조례	<ul> <li>「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구역 부지</li> <li>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li> <li>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li> <li>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li> <li>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지역</li> <li>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li> <li>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섞여있는 지역으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li> <li>그 밖에 난개발 방지 등이 필요한 지역</li> </ul>	제12조

출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060호, 2011.9.16, 타법개정, 출처)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제1937호, 2009.12.24, 일부개정

# 경관중점관리구역의 관리 및 운영방안

### 경관중점관리구역의 지정

• 경관중점관리구역은 앞서 설정된 기본구상에서 특히 중점적인 경관 보잔관리·형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당진시 차원에서 해당 경관자원이 지니는 중요성, 상징성, 장소성, 등을 고려하여 구역설정

• • •

### 경관중점관리구역의 위치

- 당진동 구시가지 경관중점관리구역
- 당진천 주변 경관중점관리구역
- 석문국가산업단지 경관중점관리구역
- 삽교호 관광지 경관중점관리구역
- 면천읍성 주변 경관중점관리구역
- 당진시청사 가로변 경관중점관리구역

### 경관중점관리구역의 관리 및 운영방안

- 경관중점관리구역 내 모든 건축물은 조례에 경관심의대상으로 지정
- 경관중점관리구역 내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 경관중점관리구역 내 행위제한 및 체크리스트 항목 명시
- 행위주체가 알기 쉽도록 심의위원회 심의기준 및 운영방침 제시
- 경관중점관리구역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심의도서 작성
- 심의신청 시 심의기준 및 가이드라인에 맞춰 심의도서 작성
- 설계내용은 도식화하여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 경관중점관리구역의 경관관리 항목

구분	주요내용
건축물에 관한 사항	건축물배치 건축형태 건축재료 건축외관 지붕형태 담장 외벽, 건축선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주요 가로 진입로 주차장 공원 녹지 하천 및 실개천 수종 포장 등
광고물에 관한 사항	간판의 크기 형태 문자 색상 도형 재질 설치방법 등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색채에 관한 사항	건축외장재에 따른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조명에 관한 사항	간선도로변에서의 지표 동을 설정하고 변화 있는 입면계획 및 야간 조명
경관특화방안에 관한 사항	스카이라인 오픈스페이스 조망점 상징물 녹지공간에 대한 경관특화 방안
기타 관리항목에 관한 사항	친환경계획 및 에너지저감계획을 반영하도록 경관관리

# 대규모 개발지역의 경관관리 방안

#### 대규모 개발지역의 특정경관계획 수립

- 대규모 개발지역별로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특정경과계획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특정경관계획에 대한 내용을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

### 대규모 개발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차별화

- 특정경관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접목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차별화
- 획일적이지 않도록 특정 테마를 부여하여 독차적인 계획을 수립
- 지역에 따라 차별화 요소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

# 대규모 개발지역의 특정경관계획

### 대규모 개발지역의 특정경관계획 수립내용

- 특정경관계획의 개요 특정경관계획의 개요: 배경 및 목적, 범위, 수립 방법과 과정 등을 제시함
- 특정경관계획의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 : 유형별 경관자원조사, 경관자원조사의 범위, 경관자원 조사의 종합, 경관구조분석, 경관의식조사, 관련법규 및 유사사례 검토 등을 제시함
- 특정경관계획의 기본구상 : 기본방향의 설정, 미래상의 설정, 추진전략의 제시, 기본구상의 방향, 기본구상의 내용 등을 제시함
- 특정경관계획의 수립 : 특정경관계획의 내용, 경관권역계획, 경관축계획, 경관거점계획 등을 제 시함
- 특정경관계획의 경관설계지침 : 건축물 경관설계지침, 오픈스페이스 경관설계지침, 옥외광고물 경관설계지침, 공공시설물 경관설계지침, 색채 경관설계지침, 야간 경관설계지침 등을 제시함
- 계획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특정경관계획의 실행

- 특정경관계획의 경관설계지침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함
- 요소별 경관설계지침은 경관계획의 실행을 위한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야간조명 등의 경관구성요소별 규모, 배치, 형태, 재료, 색채 등에 관한 설계사항 등을 포함
- 경관설계지침은 모든 대상과 계획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과 특정 대상이나 계획에만 적용 되는 지침으로 구분하여 제시
- 세부적으로 제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 경관적 요소를 살펴보면 건축물에서는 규모, 용도, 위치, 형태, 외관, 건축선, 스카이라인, 랜드마크, 지붕형태 등을 제어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물에서는 가로등, 도로의 포장형태, 휴지통, 교통시설, 조명시설, 안내시설, 편의시설 등의 형태와 모양, 색채 등을 제어할 수 있음

### 대규모 개발지역별 특정경관계획 시 반영 사항

- 경관권역계획 경관축계획 경관거점계획 등의 경관기본계획에 따라 전체적인 골격을 제시
- 경관중점관리구역에 속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경관중점관리구역 설계지침의 내용을 반영
- 주요 간선가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주요 간선가로 설계지침의 내용을 반영
- 건축물 경관설계지침에 따르고 그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한다. 각 용지별로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되도록 함

• • •

- 오픈스페이스 경관설계지침에 따르고 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 색채 경관설계지침에 따르고 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 광고물 경관설계지침에 따르고 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 시설물 경관설계지침에 따르고 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 야간 경관설계지침에 따르고 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 5. 경관사업 추진

# 경관사업의 규정

• 경관사업과 관련된 법적규정은 경관법·시행령, 당진시 경관조례에서 명시하고 있음. 주요 내용은 경관사업의 대상 및 승인, 지원방안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경관사업의 법적규정

경관법	경관법 시행령	당진시 경관조례
제13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의 승인 및 시행조건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경관사업계획서의 내용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14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역할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감독) 소요자금의 보조 및 융자 경관사업의 감독		제15조(재정지원)
제24조(경관위원회의 기능) 심의 : 경관사업의 승인 자문 : 경관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제25조(심의대상) 제26조(자문대상)

# 경관사업의 대상

• 경관사업은 경관법 제13조와 당진시 경관조례 제9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 열거된 사항과 같음

### 경관사업의 대상

구 분	대상
경관법	<ul> <li>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li> <li>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li> <li>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li> <li>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li> <li>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li> </ul>
당진시 경관조례	<ul> <li>공공시설물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li> <li>경관지구·미관지구 안에서의 경관정비에 관한 사업</li> <li>건축물의 녹화사업을 위한 옥상조경 등</li> <li>하천 등 수변경관에 관한 사업</li> <li>공업지역 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li> <li>옥외광고물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li> <li>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li> <li>도시 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li> <li>그 밖에 시수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ul>

# 경관사업의 추진절차

• 경관사업 모델개발 및 실행방안(국토해양부, 2009)의 경관사업 추진절차를 따름

# 경관사업의 추진절차

45VI	절 차	추진내용
Step 1	사업기본계획 수립	• 경관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의 수립 • 경관사업대상지의 선정기준 및 후보지역 제시
Step 2	사업대상지 선정	• 경관사업을 위한 사업대상지의 위치 및 규모를 설정 • 심의위원회 및 주민협의회의 심의 및 협의를 통해 선정
Step 3	사업의 구체화	<ul><li>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li><li>관계부서의 협의 및 사업비 고려</li><li>사업추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li></ul>
Step 4	재정심사	• 투자 및 융자 심사 (지자체 기준)
Step 5	예산확보	• 기본 및 실시설계의 예산 확보 • 당해 연도 예산확보 및 추경예산 요구
Step 6	설계용역 발주	<ul><li>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li><li>설계용역 발주 심의</li><li>설계용역 계약 심의</li></ul>
Step 7	경관위원회 심의	• 기본계획 완료 후 디자인 심의
Step 8	실시설계 추진	•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추진 • 예산배정 요청 (계약심사 결과 첨부)
Step 9	공사발주	• 공사감독 의뢰
Step 10	공사추진	• 공사추진 공정회의
Step 11	사후관리체계 추진	<ul><li>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관리체계 구축</li><li>가로시설물 및 거리유지 관리</li></ul>
Step 12	사업효과 분석	• 전문가를 통한 사업효과 분석 • 주민 설문조사를 통한 사업효과 분석

# 경관사업의 단계별 구분

# 단기사업(2012~2015)

- 당진시에서 시급하게 경관관리가 요구되는 사업
-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사업
- 당진의 이미지를 고양하기 위한 사업
- 사업의 중요도가 큰 사업
- 현재의 공공사업과 연계가능한 사업

기어교	리사기	재원별			즈쾨	ען די	
사업명	대상지	국비	도비	시비	민자	주관	비고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당진동 터미널 일원	0		0	0	공공,민간	
관광지 가로변 정비사업	왜목,삽교,도비도,난지도			0	0	공공,민간	
당진동 구시가지 가로경관개선사업	3식	0	0	0		공공	
진입부 상징조형물 설치사업	당진IC,송악IC,면천IC			0		공공	
당진천 주변정비사업		0	0	0	0	공공,민간	
천주교 순례지 정비사업	합덕-신리	0	0	0	0	공공,민간	
해안항포구 경관개선사업	10개소			0	0	공공,민간	

### 중기사업(2016~2020)

- 기본경관계획 재정부(5년 후)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 사업의 중요도가 낮은 사업, 주민과 행정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면서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업 등

사업명	rll 시구기	재원별			주과	비고	
77日で	네양시	국비	도비	시비	민자	下ゼ	미쓰
상징가로 경관형성사업	시청사 주변 도로		0	0		공공	
읍면소재지 중심가로 개선사업	12식	0	0	0	0	공공,민간	
공공건축물 야간조명 개선사업				0		공공	
석문방조제,대호방조제 특화사업	1식	0		0		공공	
가로등 디자인 특화사업			0	0		공공	
저수지 주변정비사업(경관도로)	1식			0		공공	

### 장기사업(2021~2025)

- 사업시기가 긴 사업
- 예산소요가 많은 사업
- 다른 사업과 연계성이 적은 사업

사업명	대상지	재원별			주관 비	비고	
	네성시	국비	도비	시비	민자	十七	1111
국도(38호선)경관개선사업	1식			0	0	공공,민간	
국도(32호선)경관개선사업	1식			0	0	공공,민간	
산업단지 가로변 녹화사업	2개소		0	0		공공	
시경계 가로수 정비사업	4개소		0	0		공공	
교량 조명 디자인 개선사업	20개소		0	0		공공	
면천읍성 역사도시 조성사업	1식	0	0	0	0	공공,민간	
예술조형작품 공모사업	1식			0		공공	
탐방로 조성사업	1식			0		공공	

### 예산 및 재정계획

### 사업비 산정기준

•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가 제안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주민협의체를 통해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토록 함

• • •

- 경관형성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각각의 사업이 가지는 특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가정보'와 기존의 계획보고서상의 집행계획 등을 참고로 개략적인 사업비를 추정
- 사업비는 크게 조사 설계비와 공사비(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등) 기타 부대비용 등으로 구성하되 보상비는 제외
- 조사설계비는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도시계획 및 조경, 토목, 단지계획 관련사항을 산정하고, 건축부문은 민간 투자로서 본 범위에서는 제외
- 공사비는 토목과 조경, 색채, 조명 등 기반시설 공사비로 산정하며, 부대비용은 제외

### 사업비 산정

- 본 투자사업비는 일반적인 공사조건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략사업비로서 경관관리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기타 기반시설 공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당진시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형성사업에 소요되는 총 투자사업비는 약 87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
- 단기사업에는 167.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기사업에는 138.2억원, 장기사업에는 568.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시업명	대상지	시업내역	사업비 (억원)	주체	추진 단계
계			874.4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당진동 터미널 일원	300개소*50만원	1.5	공공,민간	단기
관광지 가로변 정비사업	왜목, 삽교, 도비도, 난지도	1,000m*30단원/m	14.4	공공,민간	단기
당진동 구시가지 가로경관개선사업	3식	1,200m*30만원/m	10.8	공공	단기
진입부 상징조형물 설치시업	당진,송악,면천IC	2억원*3개소	6	공공	단기
천주교 순례지 정비시업	합덕-신리	1식	60	공공,민간	단기
당진천 주변정비사업		5000*50만원/m	25	공공,민간	단기
해안항포구 경관개선사업	10개소	5억원*10개소	50	공공,민간	단기
상징가로 경관형성시업	시청사 주변 도로	2,000m*50만원/m	10	공공	중기
읍면소재지 중심가로 개선시업	12식	200m*30만원/m	7.2	공공,민간	중기
공공건축물 이간조명 개선시업		3천만원*50개소	15	공공	중기
석문방조제, 대호방조제 특화시업	1식	5억원*2개소	10	공공	중기
기로등 디자인 특화시업		5천만원*300개소	60	공공	중기
저수지 주변정비사업(경관도로)	1식	2,000m*30만원/m*6개소	36	공공	중기
국도(38호선)경관개선사업	1식	4,500m*50만원/m	22.5	공공,민간	장기
국도(32호선)경관개선사업	1식	3,000m*50만원/m	15	공공,민간	장기
신업단지 가로변 녹화시업	2개소	5,000m*30만원/m	30	공공	장기
시경계 가로수 정비시업	4개소	2,000m*30만원/m	60	공공	장기
교량 조명 디자인 개선사업	20개소	3천만원*20개소	6	공공	장기
면천읍성 역사도시 조성시업	1식	1식	230	공공,민간	장기
예술조형작품 공모시업	1식	2억원*100개소	200	공공	장기
탐방로 조성시업	1식		5	공공	장기

# 6. 경관협정의 적용 및 운영

• 경관협정은 쾌적한 환경 및 이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하여 주민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임

# 경관협정의 규정

• 경관협정과 관련된 법적 규정은 경관법·시행령, 당진시 경관조례에서 명시하고 있음. 주요 내용은 경관협정의 체결조건 및 협정내용, 경관협정의 인가·변경·폐지에 대한 사항, 협정의 준수·원방안 등에 관한 규정 등임

### 경관협정 법적규정

경관법	경관법 시행령	당진시 경관조례
제16조 (경관협정의 체결) 경관협정 체결조건 1인협정 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서 양식	제9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0조 (경관협정의 내용)	제14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5조 (경관협정의 내용) 제16조 (경관협정서의 내용)
제17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조건과 위원구성 경관협정운영회의 신고→시장군수	제11조 (경관협정 운영회의 설립신고)	제17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18조 (경관협정의 인가) 심의:시군경관위원회/인가:시장군수 인가내용의 열람:시장군수	제12조 (경관협정의 공고 등) 공고방법, 열람장소	
제19,20조 (경관협정의 변경, 폐지) 변경 또는 폐지의 합의 기준→대통령령 심의:시군경관위원회/인가:시장군수		
제21조 (경관협정의 준수 및 승계) 경관협정 체결자의 경관협정 준수의무 경관협정의 승계→대통령령	제13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승계조건, 신고기한 등	제18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제22조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경관협정 승인에 따른 기술·재정적 지원 비용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제14조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제19조 (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제20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제21조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제22조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제24조 (경관위원회의 기능) 심의 : 경관협정의 인가 자문 : 경관협정의 체결 및 운용 관련 사항	제17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제25조 (심의대상) 제26조 (자문대상)

#### 경관협정 체결자

•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 등의 전원합의에 의하여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 일단의 토지 또는 하나의 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경관협정 대상지역으로 하는 경관협정의 체결이 가능함

### 경관협정 체결사항

• 경관협정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은 건축물 의장, 색채, 옥외광고물 등 아래의 표에 열거된 사항과 같이 다양한 항목에 대하여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

#### 경관협정 체결사항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
구 분	대상
경관법	<ul> <li>건축물의 의장·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li> <li>공작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li> <li>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li> <li>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li> <li>역사·문화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li> </ul>
경관법 시행규칙	• 녹지, 가로, 수변공간 및 야간조명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구조물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당진시 경관조례	<ul> <li>「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li> <li>경관협정의 이행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시장이 정하는 사항</li> </ul>

### 경관협정운영회

-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경관협정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 정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운영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경관협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관련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음
- 경관협정 운영회 설립방법은 기존 단체를 이용하는 방법과 신설하는 방법이 있으며 신설하는 경우에는 민간단체와 법인체로 설립하는 방법이 있으며, 법인체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이 있음

#### 경관협정서

- 경관협정은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하고, 주민 전원이 합의한 내용이어야 한다. 경관협정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경관협정의 명칭 : 해당 협정의 명칭을 명시한다. '○○○마을 경관협정', '○○○가로 옥외 광고물 경관협정' 등 지명이나 협정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 등의 사용이 가능함
-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 협정체결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상지역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1/1,000~1/5,000 지도 등에 위치를 작성하여야 함.
  - 단, 대상지역과 관련해서는 경관협정 체결자의 소유가 아닌 공공용지의 경우, 공공용지의 훼 손이나 물리적인 변경을 제외한 사항에 관해서는 협정체결이 가능하고, 이 경우, 공공용지도 대상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음

-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규모 :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최소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해당 경관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규모에 대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전원동의를 얻을 수 있는 한 최대 규모에 대한 제한도 없음
- 경관협정의 목적 : 해당 협정이 추구하는 목적을 명시함
- 경관협정의 내용 :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록한다. 협정내용은 체결자 전원의 동의를 업은 사항에 한한다. 협정내용은 경관법 제16조 제4항에서 규정한 여섯가지 항목을 위주로 작성하고, 협정지역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이 담기도록 함
- 경관협정 체결자 및 경관협정운영회의 명칭 및 주소 : 협정체결에 동의한 체결자의 성명, 주소, 날인을 첨부하고, 체결된 협정을 운영할 경관협정운영회의 명칭 및 주소 등을 명시함
- 경관협정 유효기간 : 경관협정의 효력이 유지되는 유효기간을 명시한다. 지자체 보조금 등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받을 경우, 보조금 지급기관 등과 협의하여 경관협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유효기간의 표시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등으로 함.
- 경관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 경관협정 위반시 제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경관협 정 위반 시 제재 등의 업무는 경관협정운영회에서 담당하도록 함
- 그 밖에 당진시 경관조례로 정하는 사항 :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 관련 도서, 경관협정 이행계획 등에 대하여 추가로 명시하도록 함
-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최초 협정을 체결한 자가 매매나 증여·양도 등을 통해 토지소 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경우, 경관협정도 승계되어야 하며, 경관협정서에 승계방법에 대해 명시하도록 한다. 매매계약시 계약서에 협정의 승계에 대한 단서를 부가하는 등의 방법에 대해 명시하도록 함
- 경관협정 폐지시 보조금, 지원금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보조금이나 기타 인센티브를 받는 경관협정을 중도에 폐지할 경우, 이들의 반환이나 배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함
- 기타사항: 이상의 항목 외에 협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함

### 경관협정 인가 및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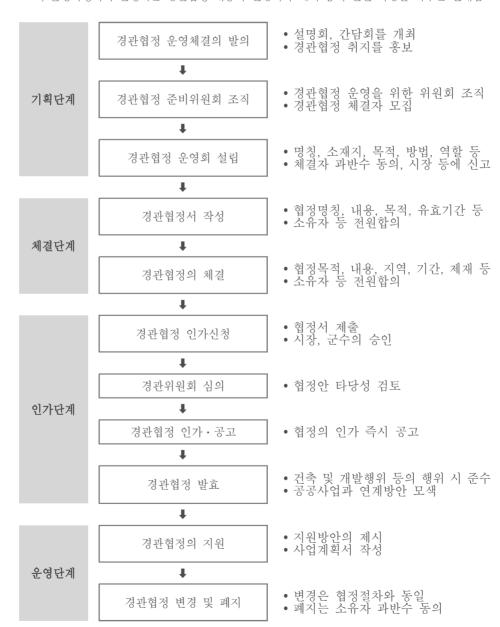
- 경관협정 체결자 또는 경관협정 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음. 경관협정을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경관협정이 당진시에 의해 인가 및 공고되면 경관협정이 발효되며, 경관협정체결자 등(지 자체, 주민, 사업자 등)은 경관협정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건축행위 및 개발행위를 하도록하 며 주민은 협정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고, 지자체는 경관협정에 의한 경관형성사업 추진 시 적극 협조하도록 함

###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

- 기 인가된 협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협정의 체결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밟음
- 기 인가된 협정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 협정체결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 또는 군수의 인 가를 받아야 함. 폐지결정에 대한 공고 및 열람은 인가 및 변경과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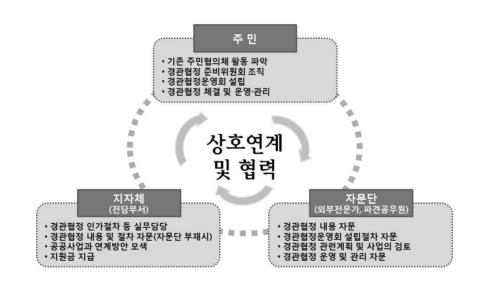
# 경관협정의 추진절차

- 경관협정의 추진절차는 크게 협정기획단계, 협정체결단계, 협정인가단계, 협정운영단계로 구분 할 수 있음
- 경관협정의 기획단계는 협정체결의 준비단계로서 협정체결자의 모집, 협정체결의 발의, 경관협 정 준비위원회 조직을 통해서 경관협정 운영회를 설립하는 단계임
- 경관협정의 체결단계는 경관협정 체결자가 경관협정의 내용 등을 담은 경관협정서를 작성하고, 소유자의 전원합의를 통해 체결하는 단계임
- 경관협정의 인가단계는 협정서를 인가 받기 위하여 신청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를 받아 공고하고 발효되는 단계임
- 경관협정의 운영단계는 인가받은 경관협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경관협정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단계임



### 경관협정의 참여주체

- 경관협정의 참여주체는 지자체(당진시), 주민, 자문단으로 구분할 수 있고, 참여주체간의 상호 연계 및 협력이 필요
- 자문단: 경관협정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체로서 외부전문가 및 파견공무원으로 구성함. 경관 협정 내용에 대한 자문 외에 경관협정운영회 결성부터 인가, 운영에 이르는 절차에 관한 지원, 협정내용의 미이행 및 승계거부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항에 대한 자문 등 다양한 역할을 수 행함
- 지자체 전담부서 : 경관협정 인가관련 절차, 공공사업과의 연계 및 지원금 지급 등의 행정적인 내용을 전담하며 자문단의 구성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자문역할을 담당하기도 함. 따라서 전 담부서는 업무처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관협정 외에 경관계획 및 경관사업 등 지역 경관 전반에 걸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함
- 주민: 기존 주민협의체(상인회, 시민단체 등)와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경관협정 체결을 발의하고, 경관협정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경관협정 체결자를 모집한다. 도한 경관협정 운영회를 설립하여 경관협정서를 작성하고 체결하여 인가신청함



### 참여주체별 역할분담

지자체(당진시)	자문단	주민
<ul> <li>기존 주민협의체 활동 파악</li> <li>경관협정 홍보</li> <li>경관위원회 심의</li> <li>경관협정 인가</li> <li>공고 및 주민열람</li> <li>공공사업과 연계방안 모색</li> <li>지원금 지급</li> </ul>	<ul> <li>기존 주민협의체 활동 파악</li> <li>경관협정 홍보</li> <li>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및 신고</li> <li>관련계획 및 사업의 검토</li> <li>지역특성 파악</li> <li>경관협정서 작성</li> <li>사업계획서 작성</li> <li>사업취획 및 관리</li> <li>경관협정 운영 및 관리</li> <li>경관협정 변경</li> <li>경관협정 만료 또는 폐지</li> </ul>	<ul> <li>주민리더중심 자치활동</li> <li>기존 주민협의체 활동 파악</li> <li>경관협정체결 발의</li> <li>경관협정 준비위원회 조직</li> <li>경관협정 전비위원회 조직</li> <li>경관협정원 경화 설립 및 신고</li> <li>관련계획 및 사업의 검토</li> <li>지역특성 파악</li> <li>경관협정서 작성</li> <li>사업계획서 작성</li> <li>사업취직</li> <li>사업추진</li> <li>경관협정 면경</li> <li>경관협정 만료 또는 폐지</li> </ul>

# 7. 경관관련 심의 및 자문

# 경관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구성 분야

- 시의회 의원
- 시 및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관련분야에 공부하는 경험과 식 견을 갖춘 자

# 전문 소위원회의 구성

#### 건축자문단

• 구성인워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하로 구성

• 구성분야 : 건축계획, 건축설계, 건축구조, 건축환경, 조경, 디자인 등

• 운영횟수 : 월 1회 운영

• 자문내용 : 건축 허가 대상 및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의 디자인 자문

### 디자인자문단(색채 포함)

• 구성인원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하로 구성

• 구성분야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공간디자인, 환경디자인, 조명디자인, 색채, 광고물, 조경,건축 등

• 운영횟수 : 월 1회 운영

• 자문내용 : 도시구조물 및 시설물, 공공사업의 디자인 자문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 경관관련 위원회의 운영

• 경관관련 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 통합운영 : 경관위원회와 경관관련 위원회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경관위원회 위원을 1/2이상으로 하여 공동위원회 구성하여 심의

• 개별운영 : 경관관련 위원회에 경관위원회 위원을 2명이상 포함하여 개별위원회에서 심의

# 심의 및 자문대상

### 심의대상

- 경관계획의 승인 및 결정
- 경관사업의 승인
- 경관협정의 승인
-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

### 자문대상

-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경관조례의 제정에 관한 사항
- 경관사업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경관협정의 체결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조례로 정한 경관에 젓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경관 심의 및 자문

### 신청시기 : 위원회 개최 2주전

- 경관계획(지구단위계획) 등 : 기본계획 수립 전
- 용역사업 :
  - 1. 허가(승인·인가·신고 등) 대상의 경우는 허가 등을 받기 전
  - 2. 용역사업 등의 실시설계 초기단계, 공동주택 색채 심의는 골조공사 80%이전
  - 3. 그 밖의 사업은 기본디자인설계 확정 이전

### 신청서류 : 심의신청서 1부 및 심의도서

#### 심의도서

- 심의신청시 : 3부(검토용), PDF파일(위원검토용)
- 심의개최 7일전 : 심의용 20부, PPT파일

# 경관위원회 검토사항

- 경관법, 경관조례 등 관련법규 저촉 여부
- 경관계획에 따른 경관설계지침 준수 여부
- 경관중점관리구역 계획에 따른 설계지침 준수 여부

# 경관사전 협의제도 도입·운영

### 사전 체크리스트 시행의 필요성

• 사업자를 비롯한 건축행위와 관련된 자는 설계과정에서 당진시와 협의를 통해 계획 추진에 대한 배려필요

### 목적

- 사업여건상 반영이 곤란한 사항으로 인하여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 사업자와 담당자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경관위원회에 빠른 상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함
- 심의위원들의 경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기술) 또는 지적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경관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

#### 방법

- 건축행위와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 초기단계에서 건축물 디자인 등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내용 사전 점검
-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경관전문가의 사전자문
- 자문내용은 경관심의시 보고함으로써 심의기간 단축

### 심의절차의 개선

- 현행 경관조례에서 제시한 실시설계 이전, 디자인 확정 이전, 사업발주 이전의 경관심의 시기 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건축설계가 완료된 상황에서 경관을 고려한 많은 수정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 입장에서 는 많은 부담을 갖게 됨
- 특히, 민간사업자의 심의는 불가피한 현실에서 사업진행에 대한 조치 필요
  - 민간사업자는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 내용의 수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 예상
- 따라서, 공익을 위한 사유재산권이 과도하게 규제당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양해나 합의가 전 제되어야 함

심의대상	심의 시기 조정(안)	
도시개발사업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택지개발사업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 도시 및 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 재정비촉진계획의 심의전	
관광(단)지 개발사업	• 조성계획 승인 전	
공원녹지계획 승인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산업단지개발사업	• 국토해양부 승인 전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 도시 및 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전	
주택건설사업	• 사업계획 승인 전	

### 경관설계지침

- 경관설계지침은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가로시설물, 색채, 야간조명 등의 경관구성 요소별로 경관설계의 방향, 원칙 등을 제시한 지침임
- 경관설계지침은 설계자가 당해 사업에 해당하는 설계지침을 참고하여 건축물을 구상하고, 경관 심의 또는 자문대상인 경우에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시 제출하도 록 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의 형성을 유도

### 경관설계지침 적용방안

- ① 경관설계지침 확인
- 경관설계지침을 확인

# ② 경관설계지침을 고려한 건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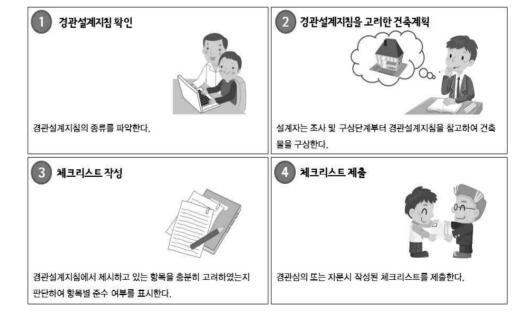
• 설계자는 조사 및 구상단계부터 경관설계지침을 참고하여 건축물을 구상

#### ③ 체크리스트 작성

• 경관적으로 검토해야할 항목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판단하여 경관설계지침 안에 항목별 표로 제시된 체크리스트를 작성

### ④ 체크리스트 제출

•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시 체크리스트를 제출



# 8. 경관관리 실행조직 강화 및 운영

- 당진시에서는 경관법을 다루는 부서와 기타 관련법을 다루는 부서가 구분되어있고, 부서간의 협의 및 공동작업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행정일선에서 법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움
- 경관관리는 다분야에 걸쳐서 연관되어 있고, 특히 도시의 모든 부분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조성·관리하기 이해서는 경관과 관련된 많은 주체들, 특히 행정주체 사이 의 협력적인 운영체계 구축이 전제되어야 함
- 따라서, 현재는 팀(계)의 일부 담당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음

#### 기존 조직 중심의 협의체계 강화 / 단기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경관과 관련된 협의 체계를 좀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현재의 일반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는 방안과 경관부서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계로 나눌 수 있음
- 일반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은 부서간 협의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긴밀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나 부서간 공유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비전이나 계획이 전체되어야 하고, 정 기적인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므로 업무처리에 장시간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음
- 경관부서를 중심으로 하는 협의체계는 전자와 같이 관련 행정주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통합 적 계획이 전제되어야 하고, 관련 부서간의 협의체계가 강제적이지 않으므로 상호간의 협약 체 결하거나 정기적인 업무회의 운영 등을 통해 관련부서간 협의가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 이러한 협의체계는 국내의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으나 전문가가 1-2명에 불과하고, 채용 된 전문가들이 계약적이라는 한계로 인해 자체적으로 통합적 계획을 수립하거나 장기적인 계획 을 마련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음
- 또한 관련부서가 공유할 수 있는 계획이 없어 서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련 부서 가 혐의와 조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움
- 이러한 협력체계는 비교적 단시간에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관련부서들의 협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긴급한 사안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통합가능성이라는 관점이나 물리적 대상의 통합과 계획과정의 통합이라 는 목적에서 모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경관 전담부서 설치 / 중장기

- 경관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계획, 조성,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임
- 경관 관리를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으나 경관 자체가 복잡하므로 지자체장이 전략적으로 경관관련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음
- 현실적으로 경관과 관련된 전담부서를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이 부서에서 경관과 관련된 통합 적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음
- 장기적으로나 근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방안이 바람직하겠지만, 전면적인 개선이 아니더라도 경 관과 관련된 사업 발주주체만이라도 어느 정도 일원화 시켜도 많은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을 것임
- 향후, 경관계획만이 아니라 경관사업의 추진에 따른 전과정을 관리하여 일관되게 사업을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주제에 대한 부서내 작은 계 형태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계획에서부터 사업까지 일관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은 조직개편을 하지 않더라도 개별사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합적인 운영이 가능

### 관련부서간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외부 민간 전문가 활용 / 단기

- 경관과 관련하여 외부의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는 형태로, 외부 전문가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조직이나 단체가 될 수도 있음
- 외부전문가의 활용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검토와 조언, 모니 터링이 가능하며, 다른 관련 주체가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통합적인 비 전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직접 도움을 주는 형태로서 관련 부서간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형태는 현재의 제도적 상황에서도 지자체와 관련부서, 전문가의 합의에 의해서 추진이 가능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외부전문가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단체장의 의지나 담당 실무 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담보되어야 하며, 동시에 공공과 전문가 사이의 신뢰가 형성되어야만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더불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적 장치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함
- 최근에는 민간전문가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통합가능성이나 통합의 목적에서도 비교적 효과적이어서 경관을 비롯한 도시, 조경, 옥외광고물 등의 개별 사업에 모두 적용이 가 능함

#### 경관관련 행정조직의 협력적 운영체계 구축 방안과 특성

구분	기존부서중심의 협의체계 강화	전담부서 설치	외부전문가 활용
특징	<ul><li>기존 조직내 협의체계 강화</li><li>업무처리시간 장기간 소요</li></ul>	사업발주주체의 일원화 가능     장기적, 통합적 계획 수립 가능     현 제도 적용 어려움     사업특성에 따라 전담반(T/F)     구성	모니터링 가능
	<ul><li>부서내 전문가</li><li>장기작통합적 계획</li><li>긴밀한 협의체계</li><li>관련자와의 공감대</li></ul>	• 행정조직 전면 개편	• 민간전문가 활용제도 • 관련자의 의지와 관심
통합 기능성	<ul><li>적합</li></ul>	• 매우 적합	<ul><li>적합</li></ul>
단계	• 단기적 적용방안	• 장기적 적용방안	• 단기적 적용방안

### 제도 개선

• 앞에서 제시한 협력적 운영체계 구축방안은 통합적인 경관계획 및 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 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이를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 인 방법들이 검토되어야 함

• 이와 같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그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관련부서간의 상호협약 및 정기적인 협의회 구성 운영

- 단기적으로 기존부서 중심의 운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간 상호협약 제도를 공식 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 이러한 협약은 그동안 검토서에 의한 내용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운영적 측면의 틀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협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의에서 조정해야할 목록, 정기적인 협의회 구성 등과 같은 업무 이행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나 지침을 보완하여 좀 더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
- 이를 위해 관련 주체간의 정기적인 회의뿐만 아니라 워크숍, 세미나 등과 같은 다양하고 실질 적인 협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토록 하며, 이를 업무수행지침에 포함하여 활용토록 함

#### 전문직 공무원 제도 개선

- 현재는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고, 향후 경관사업의 추진시에는 전문적인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업무영역에서 옥외광고물, 역사문화환경, 공원녹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화된 행정을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경관과 관련된 실무전문가 들이 중심이 되어 관련 부서를 조직할 수 있도록 전문직 공무원의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현재는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 개방형 직위제1)를 채택하고 있으나 민간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등 민간전문가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전문가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미흡한 실정임
- 또한, 임용기간이 5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실력이 있는 전문가들을 행정조직에 오래 머무르 게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관련 전문가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임

#### 민간전문가의 활용방안 마련

- 외부의 민간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순히 용역관계나 단순한 자문관계 가 아닌 행정주체와 수평적 관계의 조력자 및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정립되어야 함
- 아직까지 경관관련 전문가의 유형이나 업무의 범위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지자체에서 민간전 문가 제도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 따라서 민간 전문가의 보수나 운영지침 등에 대해 제시하게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규 정에 근거한 민간전문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
- 더불어서, 상시적인 업무협조가 아니더라도 경관위원회의 위원들을 활용방안도 동시에 모색함

<sup>1)</sup>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경쟁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자 가운데 최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

### 홍보 및 계몽방안

### 경관계획 홍보방안

- 경관 홈페이지 운영
- 경관제도 경관정책에 대한 홍보 및 경관사업 등 시민의견 제안운영
- 홍보배너를 제작하여 관련 홈페이지의 팝업으로 활용
- 학회, 건축 잡지사 등 단체와 광고협력을 통한 의왕시 경관소개

### 경관 교육

-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관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
- 공무원 등 행정직을 대상으로 경관계획과 업무와의 연계방안 교육
- 당진시 관내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업자들을 대상으로 경관계획과 개발사업에 경관계획 반 영사항을 교육
- 당진시에 자문, 심의 등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경관계획 내용에 대한 안내와 자문, 심의 시 활용방안을 홍보

### 홍보물 발행

- 경관계획 홍보물을 발행하여 경관계획에 대한 지속적 홍보
- 경관계획을 통한 결과물을 연 1회 정기적으로 발행
- 경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홍보 팸플릿 발행

#### 심포지엄 개최

- 당진시 경관계획과 경관시나리오를 소개하는 경관심포지엄을 개최
- 시민 및 관계자들의 지속적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
- 한국경관학회, 도시설계학회 등의 경관세미나 등을 유치

### 경관계획 활성화방안

#### 포상제도

- 경관에 대한 배려, 계획, 실천 등에 대한 포상을 실시
- 경관을 실천하는 사람에 대한 포상을 실시
-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및 행정인에 대한 포상을 실시

### 경관계획 추후계획

- 녹색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경관상세 가이드라인 수립
- 친환경 에너지를 도입하기 위한 경관상세 가이드라인 수립
-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특정경관계획 수립 건축물, 수변, 녹지, 색채, 야경, 광고물, 시설물 등 경관상세계획수립